

충청북도 임차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임차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4년 7월 3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7월 3일

3. 제안이유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임차 노동자복지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 임차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하여 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충청북도 임차 노동자복지관 운영

나. 위 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분평동 무진빌딩 7·8층)

다. 규 모 : 건물연면적 1,037.12㎡ / 7층 444.68㎡, 8층 592.44㎡

라. 주요시설 : 회의실, 사무실, 노동상담실 등

마.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2년간(예정 '25. 1. ~ '26. 12.)

바. 수탁기관 : 도내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現 임차복지관 운영기관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박옥주, '18. 11. 1. ~ '24. 12. 31.)

사. 위탁방법 : 공개모집

아. 사 업 비 : 179,520천원(도비 100%)

※ 연도별 원가계산 후 변동가능

자. 위탁 주요사무

-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 노동자의 직업안정을 위한 법률 상담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 그 밖에 노동자,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제출배경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는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노동자복지관을 운영하되,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위탁사무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이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충청북도 임차 노동자복지관 운영’으로 노동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이 동의안의 추진 근거는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조례」 제4조에 따른 것으로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이 가능함**
- 노동자 복지관의 민간위탁은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이 있음**

○ 절차적 타당성 등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1)에서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례 제5조의2제8호(2)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소관 부서인 경제통상국(일자리정책과)은 사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가 누락된 동의안을 제출하여 절차 위반 및 동의안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함

1)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 | |
|----------------------|-------------------------|
|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 3. 경제적 효율성 |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 |

2) 제5조의2(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시설위탁의 경우에 한정하며, 제9호는 재계약·재위탁의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1. 위탁사무명 |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 3. 위탁사무 내용 |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및 위치도를 포함한다) |
| 5. 위탁기간 | 6. 수탁자 선정 방식 |
|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 9.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 |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

- 경제통상국(일자리정책과)은 동의안 제출(2024년 7월 3일) 이후 사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미실시와 동의안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실시함(2024년 7월 11일)³⁾
- 위 조례 제4조의2 및 제5조의2에 따른 절차 미준수 및 동의안 포함 사항 누락에 대한 집행기관의 해명이 필요하며 동의안 심사 시 주의가 요구됨

○ 수탁기관 및 위탁사무 내용

- 수탁기관은 충청북도 내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함
- 위탁사무 내용은 노동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사업 등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조례」 제3조 각 호에 따른 것으로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음

○ 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방식

-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조례」 제4조제2항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고, 이 동의안의 위탁기간은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2년간(2025. 1. ~ 2026. 12.)으로 정하여,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동의안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수탁자 선정방식을 공개모집으로 정함
- 다만, 수탁기관 선정시에는 같은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으로서의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게 선정해야 할 것임

3) 일자리정책과-5526(2024. 7. 11.), “충청북도 임차 노동자복지관 위탁운영 적정성 검토보고” 이 검토보고에는 민간위탁의 사업내용이 공공적 성격이 명확하고,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음

○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은 임대료 129,280,000원, 관리비 30,400,000원, 전기요금 19,840,000원을 포함하여 총액 179,520,000원이며,
-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건물을 직접사용하는 것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와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정함
- 소요 예산 산출 근거의 타당성 여부와 공유재산 사용료와 인건비를 상계처리하기로 정한 이유와 실효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다. 종합의견

- (필요성) 이 동의안은 노동자복지관을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함
- (절차적 타당성) 이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았으며, 같은 조례 제5조의2제8호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가 포함되지 않아 절차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동의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의안 심사 시 신중한 검토와 주의가 요구됨